

1. 개정이유

우회덤핑방지제도 도입에 따른 후속조치로 ‘경미한 변경행위’ 판단시 고려 요소를 명확히 규정하고, 원심 규정 중 우회덤핑에 적용되는 준용 가능한 사항을 반영하며, 면세점 업계 지원을 위해 보세판매장 특허 수수료 감경기간을 연장하고,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세환급가산금 등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 조정(안 제9조의3)

최근 예금 금리 수준을 감안하여 관세 등을 환급하거나 과다환급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관세환급금 또는 과다환급액에 더하는 가산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 1천분의 29에서 연 1천분의 35로 조정함.

나. 우회덤핑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 여부 판단시 고려요소 마련 등(안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신설)

- 1) 우회덤핑의 행위 유형을 ‘경미한 변경’으로 구체화 함에 따라 ‘경미한 변경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고려요소를 명확히 규정함.
- 2) 조사신청 철회, 비밀취급 자료 등 원심 덤핑조사의 절차 규정 중 우회덤핑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준용함.

다. '23년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감경 추가(안 제68조의2제3항)

법 제176조의2제4항 단서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감경 대상 매출액에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매출액을 추가함.

라. 국제항 내 국제무역선에 의한 보세운송 특례절차 세부사항 규정 신설
(안 제73조의3)

법 제220조의2의 위임에 따른 보세운송의 주체와 대상물품의 세부사항 규정을 신설함.

마.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 폐지(안 제78조)

세관 직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수수료를 폐지함.

바. 과세자료 제출서식 추가(안 제79조의4제1항 및 제3항, 별지 제68~75호 서식)

「관세법 시행령」 별표3 개정으로 과세자료제출 대상 기관 및 대상 자료가 추가됨에 따라,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사. 과세정보 전송 요구에 관한 수수료 규정(안 제88조)

관세법(법 제116조의6제11항)에 따른 과세정보 전송 요구자가 납부해야 할 수수료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아.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마련(안 제89조)

관세법(법 제327의3제9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사업자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을 규정함.

자. 관세 면제대상 희귀병치료제 추가(안 별표2)

아미팜프리딘 등 람베르트-이튼 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를 관세 면제 대상에 추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 중 “연 1천분의 29를”을 “연 1천분의 35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동종물품”을 “특정 공급국으로부터 수입량이 동종물품의 국내 수입량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거나 동종물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준”이란”을 “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영 제65조제2항”을 “영 제65조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영 제65조제3항 단서에 따른”을 “영 제65조제3항제2호 전단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영 제65조제3항”을 “영 제65조제3항 본문”으로 한다.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경미한 변경행위 판단 시 고려 요소) 영 제71조의2제2항에서 “경미한 변경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우회덤핑 조사 대상 물품과 법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이하 “덤핑방지관세물품”이라 한다)의 물리적 특성 및 화학성분 차이

2. 우회덤핑 조사 대상 물품과 덤핑방지관세물품의 법 제84조제3호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 차이
3. 덤핑방지관세물품을 우회덤핑 조사 대상 물품으로 대체가능한 범위 및 우회덤핑 조사 대상 물품의 용도
4. 우회덤핑 조사 대상물품과 덤핑방지관세물품의 생산설비 차이
5. 해당 변경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6. 기타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소

제20조의3(우회덤핑 조사 신청의 철회 등) 우회덤핑 조사의 신청 철회, 비밀취급자료, 이용가능한 자료에 관하여는 제14조, 제15조 및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 중 “영 제62조제1항”은 “영 제71조의8제1항”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영 제61조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의 기간중에”는 “무역위원회는 제71조의7제2호에 따라 무역위원회가 조사결과를 제출하기 전까지”로, “해당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는 “해당 조사”로 보며, 제15조 본문 중 “영 제64조제2항”은 “영 제71조의9제1항 및 제3항”으로 보고, 제1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영 제64조제5항”은 각각 “영 제71조의9제1항”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71조제2항제3호 및 제9호”는 “영 제71조의11제2항제2호”로 본다.

제29조제2항 전단 중 “영 제79조제2항”을 “영 제79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영 제79조제3항 단서에 따른”을 “영 제79조

제2항제2호 전단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영 제79조제3항”을 “영 제79조제2항”으로 한다.

제60조의2 중 “영 제141조의5”를 “영 제141조의8”로 한다.

제68조의2제3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3조의3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3(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 주체와 물품)

① 법 제220조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선박회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박회사를 말한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물품의 경우: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회사

2. 제2항제2호에 따른 물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회사를 말한다.

가.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회사

나. 「선박법」 제6조 후단에 의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허가한 외국적 선박이 소속된 선박회사(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허가한 기간까지 운송가능하다.)

② 법 제220조의2에서 “환적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1. 환적컨테이너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중 관세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물품

제77조의6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출입 법령에 따라 특정물품의 통관이 일시적으로 제한·금지되는 경우, 대상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표하는 정보

제78조를 삭제한다.

제79조의4제1항에 제61호부터 제6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1. 영 별표 3 제62호에 따른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 자료 : 별지 제 68호서식
62. 영 별표 3 제63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별지 제69호서식
 - 나.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별지 제70호서식
63. 영 별표 3 제64호에 따른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병) 자료 : 별지 제71호서식
64. 영 별표 3 제6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한 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 자료 : 별지 제72호서식
65. 영 별표 3 제66호에 따른 외국법인 중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계산서 자료 : 별지 제44호서식
66. 영 별표 3 제67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서: 별지 제73호서식
67. 영 별표 3 제68호에 따른 영세율 매출명세서: 별지 제74호서식
68. 영 별표 3 제69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조달 계약에 관한 자료: 별지

제75호서식

③ 영 별표 3 제64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제48호에 따른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병)를 말한다.

별지 제68호서식부터 제75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88조 및 제8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과세정보 전송 요구에 관한 수수료) 법 제116조의6제11항에 따라 과세정보 전송을 요구하려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제8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수수료에 따른다.

제89조(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법 제327조의3제9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별표2 제2호나목에 (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아미팜프리딘 등 램베르트-이튼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제48조 본문

에 따른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본문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하는 경우 그 기산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에 따라 과다환급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2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특허수수료에 적용한다.

제4조(국제항 내 국제무역선에 의한 보세운송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3의 개정 규정은 규칙 시행일 이후 보세운송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세정보 전송 요구에 관한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 개정 규정은 2024년 7월 1일 이후 과세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관세가 면제되는 희귀병치료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

신고인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국외특수 관계인	법인명(상호)		소재 국가								
	대표자(성명)		업종								
	신고인과의 관계	지배	피지배	자매	실질 지배	본점·지점 등					
매입거래 (단위: 원, %)											
일련 번호	보증(차입)거래 내역								지급보증 정상가격		
	채권자	소재 국가	통화	보증금액	차입금액	차입일	만기 (상환)일	이자율	산출 방법	정상 요율	금액
		원화	보증금액	차입금액							
			KRW								
			KRW								
			KRW								
			KRW								

성명/모법인명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거주자 과세기간/모법인 사업연도
주민등록번호/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		해외현지법인 사업연도

I.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제출 현황(총계)

제출대상 법인 수					제출법인 수	미제출 법인 수
구분	전기 말 가동법인 수	해당 사업연도 중 신설 법인 수	해당 사업연도 중 청산(지분양도) 법인 수	제출대상 법인 수		
특수관계						
기 타						

II. 제출대상 해외현지법인 (해외현지법인별로 작성)

1. 해외현지법인 기본사항: [] 거주자가 직접 투자한 해외현지법인/국내 모법인의 자회사
 [] 해외현지법인의 자회사 이하/국내 모법인의 손회사 이하

해외현지법인명					
거주지국		투자일			
해외현지법인 소재지					
업종 (업종코드)	()	직원 수 (모법인 파견 직원 수)	()		

2. 해외현지법인 투자 명세

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투자 현황 (단위: %, 원)

해외현지법인의 주주명 (주주의 거주지국)	출 자 명 세				대부투자 명세	
	출자금액	주식 수	지분율	배당금수입	대여금	대부수입이자
(가주자 본인 성명 / 주주명) (한국)						

나. 해외현지법인이 10% 이상 직접 소유한 자회사 현황 (단위: %, 원)

자회사명	업종	소재지 (국가 & 도시명)	출자일	현지법인의 출자금액	지분율	당기순손익
			· · ·			
			· · ·			
			· · ·			

다. 청산(지분양도) 여부 (단위: 원)

청산(지분양도)일	청산 유형	회수금액	주거래은행 신고 여부	[]여 []부
-----------	-------	------	-------------	--------------

III. 제출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제출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성명/모법인명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거주자 과세기간/모법인 사업연도
주민등록번호 / 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		해외현지법인 사업연도

I.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자료 제출 현황(총계)

제출대상 현지법인 수	제출 현지법인 수	미제출 현지법인 수
-------------	-----------	------------

II. 해외현지법인 재무 상황(해외현지법인별로 작성)

(단위: 원)

해외현지법인명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1. 해외현지법인 요약재무상태표 (적용환율:)		2. 해외현지법인 요약손익계산서 (적용환율:)	
I. 자산 총 계	01	I. 매출액	27
1. 현금과 예금	50	1.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	28
2.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	02	2. 기타 매출	29
3. 기타 매출채권	03	II. 매출원가	30
4. 재고자산	04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입	51
5. 유가증권	05	2. 기타 매입	52
6. 투자유가증권	55	III. 매출 총손익	56
7.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	06	IV.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31
8. 기타 대여금	07	1. 급여(모회사 파견직원)	32
9. 유형자산	08	2. 급여(기타)	33
1) 토지 및 건축물	09	3. 임 차 료	34
2)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10	4. 연구개발비	35
3) 기타 유형자산	11	5. 대손상각비	36
10. 무형자산	12	6. 기타 판매비와 관리비	37
11. 위 분류과목 외 자산	13	V. 영업손익	57
II. 부 채 총 계	14	VI. 영업외수익	38
1.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입채무	15	1. 이자수익	39
2. 기타 매입채무	16	2. 배당금수익	40
3. 특수관계인에 대한 차입금	17	3. 채무면제익	53
4. 기타 차입금	18	4. 기타 영업외수익	41
5. 미지급금	19	VII. 영업외비용	42
6. 위 분류과목 외 부채	20	1. 이자비용	43
III. 자 본 금 총 계	21	2. 기타 영업외비용	44
1. 자 본 금	22	VIII. 법인세비용 차감전손익	58
2. 기타 자본금	23	IX. 법인세비용	47
1) 자본잉여금	24	X. 당기순손익	48
2) 이익잉여금	25		
3) 기 타	26		

(뒤쪽)

3. 해외현지법인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적용환율:)		4. 해외현지법인 결손금 처리계산서 (적용환율:)	
I. 미처분이익잉여금	71	I. 미처리결손금	83
1. 전기 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전기 이월미처리결손금)	72	1. 전기 이월미처리결손금 (전기 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84
2. 전기오류수정이익 (전기오류수정손실)	73	2. 전기오류수정손실 (전기오류수정이익)	85
3. 중간배당액	74	3. 중간배당액	86
4.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75	4. 당기순손실(당기순이익)	87
II.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76	II. 결손금 처리액	88
III. 이익잉여금 처분액	77	1. 임의적립금 이입액	89
1. 현금배당	78	2. 그 밖의 법정적립금 이입액	90
2. 주식배당	79	3. 이익준비금 이입액	91
3. 의무적립금	80	4. 자본잉여금 이입액	92
4. 그 밖의 임의적립금 및 상여 등	81	III. 차기 이월미처리결손금	93
IV. 차기 이월이익잉여금	82		

III. 제출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제출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영세율 매출명세서

년 제 기 (월 일 ~ 월 일)

1. 제출자 인적사항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사업장 소재지
⑤ 업태	⑥ 종목

2. 영세율 적용 공급실적

⑦ 구분	⑧ 조문	⑨ 내 용	⑩ 금액(원)
부 가 가 치 세 법	제21조	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	
		중계무역·위탁판매·외국인도 또는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해외반출용 재화	
	수탁가공무역 수출용으로 공급하는 재화		
	제22조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조달계약에 관한 자료

(단위: 원)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구분(통합계약번호)	
계약명	
계약구분	
계약일	
납품기한	
납품일자	
계약기관명	
계약기관 구분	
계약기관 사업자번호	
계약금액(납품금액)	
지급방법	
물품 분류명(물품명)	
물품식별명(모델·규격)	
세부품명번호	
물품식별번호	
수량(EA) 또는 중량(Kg)	
도급방식	
지분율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8]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8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위반 횟수별 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법 제327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취소	-	-	-
나. 법 제327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취소	-	-	-
다. 법 제327조의3제3항제3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년	지정취소
라. 법 제327조의3제3항제4호에 따른 관세청장의 지도·감독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년	지정취소
마. 법 제32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년	지정취소
바. 법 제327조의3제3항제6호에 따른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업무정지 1년	지정취소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의3(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56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u>연 1천분의 29</u>를 말한다.</p> <p>제12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① (생략)</p> <p>②영 제60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을 말한다.</p> <p>1. (생략)</p> <p>2. 덤핑물품 수입량 : <u>동종물품의 국내수입량의 100분의 3 미만의 점유율을 보이는 공급국들로부터의 수입량의 합계가 국내수입량의 100분의 7을 초과하는 경우</u></p> <p>③영 제60조제2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u>기준</u>”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1.·2. (생략)</p>	<p>제9조의3(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 ----- ----- <u>연 1천분의 35</u>를 ----- -----.</p> <p>제12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특정 공급국으로부터 수입량이 동종물품의 국내 수입량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거나 동종물품</u>----- -----</p> <p>③----- ----- <u>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u>”란 ----- -----.</p> <p>1.·2. (현행과 같음)</p>

<신 설>

1. 우회덤핑 조사 대상 물품과 법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이하 “덤핑방지관세물품”이라 한다)의 물리적 특성 및 화학성분 차이
 2. 우회덤핑 조사 대상 물품과 덤핑방지관세물품의 법 제84조제3호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 차이
 3. 덤핑방지관세물품을 우회덤핑 조사 대상 물품으로 대체 가능한 범위 및 우회덤핑 조사 대상 물품의 용도
 4. 우회덤핑 조사 대상물품과 덤핑방지관세물품의 생산설비 차이
 5. 해당 변경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6. 기타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소
- 제20조의3(우회덤핑 조사 신청의 철회 등) 우회덤핑 조사의 신청 철회, 비밀취급자료, 이용가능한 자료에 관하여는 제14조, 제

15조 및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 중 “영 제62조제1항”은 “영 제71조의8제1항”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영 제61조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의 기간중에”는 “무역위원회는 제71조의7제2호에 따라 무역위원회가 조사결과를 제출하기 전까지”로, “해당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는 “해당 조사”로 보며, 제15조 본문 중 “영 제64조제2항”은 “영 제71조의9제1항 및 제3항”으로 보고, 제1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영 제64조제5항”은 각각 “영 제71조의9제1항”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71조제2항제3호 및 제9호”는 “영 제71조의11제2항제2호”로 본다.

제29조(보조금률의 산정 등) ①
 (생략)

②영 제79조제2항에 의하여 가
 중평균 상계관세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등을 받는 수출자

제29조(보조금률의 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영 제79조제2항제1호-----

가 다수인 때에는 수출자별 수출량에 따라 가중치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등의 금액이 과세가격의 100분의 1 미만인 수출자를 상계관세율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영 제79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신규수출자에 대하여 영 제75조에 따른 조사를 조속히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는 영 제79조제3항 본문에 따른 수출국에 대한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60조의2(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영 제141조의5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68조의2(보세관매장 특허수수료) ①·② (생략)

③ 법 제176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보세관매장 특허수수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세관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

③ ----- 영 제79조 제2항제2호 전단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

----- 영 제79조제2항 -----

제60조의2(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영 제141조의8-----

제68조의2(보세관매장 특허수수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2023
년 12월 31일-----

의 50을 감경한다.

④ (생략)

<신설>

④ (현행과 같음)

제73조의3(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 주체와 물품) ① 법 제220조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선박회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박회사를 말한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물품의 경우: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회사

2. 제2항제2호에 따른 물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회사를 말한다.

가.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회사

나. 「선박법」 제6조 후단에 의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허가한 외국적 선박이 소속된 선박회사(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허가한 기간까지 운송가능하다.)

② 법 제220조의2에서 “환적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

제77조의6(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영 제246조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참고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 3. (생략)

<신설>

제78조(검사수수료) ①법 제247조 제3항에 따라 내는 검사수수료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②제1항의 경우 수입화주와 검사의 시기 및 장소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1건으로 하여 기본수수료를 계산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

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1. 환적컨테이너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중 관세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물품

제77조의6(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수출입 법령에 따라 특정물품의 통관이 일시적으로 제한·금지되는 경우, 대상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표하는 정보

<삭제>

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따로 납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표를 수출입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를 고지하는 때에는 검사수수료를 일괄고지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79조의4(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① 법 제264조의2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영 제263조의2 및 별표 3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 60. (생략)

<신설>

제79조의4(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① -----

-----.

1. ~ 60. (현행과 같음)

61. 영 별표 3 제62호에 따른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 자료 : 별지 제 68호서식

62. 영 별표 3 제63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별지 제69호서식

나.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별지 제70호서식

63. 영 별표 3 제64호에 따른 자

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병) 자료 : 별지 제71호서식

64. 영 별표 3 제65호에 따른 국

내원천 사용료소득을 외국법

인에 지급한 자가 제출한 지

급명세서 자료 : 별지 제72호

서식

65. 영 별표 3 제66호에 따른 외

국법인 중 외국기업 본점 등

의 공통경비 배분계산서 자

료 : 별지 제44호서식

66. 영 별표 3 제67호에 따른 부

가가치세 신고서: 별지 제73

호서식

67. 영 별표 3 제68호에 따른 영

세율 매출명세서: 별지 제74

호서식

68. 영 별표 3 제69호에 따른 공

공기관의 조달 계약에 관한

자료: 별지 제75호서식

② (생략)

<신설>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별표 3 제64호의 과세자

료명란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법인세법 시

행규칙」 제82조제1항제48호에

따른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

<신 설>

서(병)를 말한다.

제88조(과세정보 전송 요구에 관한 수수료) 법 제116조의6제11항에 따라 과세정보 전송을 요구하려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제8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수수료에 따른다.

<신 설>

제89조(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법 제327조의3제9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8과 같다.